

# 수술실 CCTV 관리 · 운영규정

## 1.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

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 1항, 「의료법」 38조에 근거하여 환자·직원 등 수술실 정보주체의 안전을 목적으로 한다.

## 2.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 대수,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

설치위치	촬영범위	실별 개수	총 개수
수술실	수술실내부	1	2

## 3. 영상정보 보호책임자, 관리책임자

이름	직위	소속	전화번호
권오영	실장	관리과	033-450-3263

## 4. 영상정보의촬영시간, 보관기간, 보관장소및처리방법

병원은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, 제3자의 제공, 파기,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·관리하고, 보관기간 만료 시 영구삭제한다

촬영시간	보관기간	보관장소
환자의 수술실 입실-수술실 퇴실	30일	공급실

## 5.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

확인장소	확인방법
공급실	개인영상정보보호책임자에게 열람청구

## 6. 영상정보 기록의 제한

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,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술 장면을 CCTV로 촬영한다.

- 가.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협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
- 나.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
- 다. 그 외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

\*수술을 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경우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. 다만,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 7.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

영상정보는 다음의 경우에만 열람, 제공이 가능하다.

- 가.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,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
- 나. 「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
- 다.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

## 8. 정보청구방법

- 가. 영상정보 보호관리책임자에게 개인영상정보 열람·존재 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하며 촬영한 영상 정보는 의료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나. 철원병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촬영한 영상정보의 열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열람 등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.

## 9.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·관리적·물리적 조치

〈철원병원〉에서 처리하는 수술실 영상정보는 회선 망 분리, 암호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. 또한, 병원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으며,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일시, 열람시, 열람목적, 열람자, 열람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.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

## 10.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

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방침은 2023년 8월 1일에 제정되었으며, 법령·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·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본 기관 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.

## 11. 관리 운영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

- 가. 이 관리 운영규정은 2023.8.16.부터 적용됩니다.
- 나. 기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법과 철원병원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.